Ⅰ 보상 대상

1.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?

□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○ 또한,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,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2.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?

□ 손실보상의 대상은 ▲'21.7.7*~'21.9.30 동안 「감염병예방법」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▲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▲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▲소기업입니다.

* 「소상공인법」 개정 당시('21.7.7.)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

○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.

<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>

방역조치	대상시설
집합금지	■ 유흥·단란주점 ■ 클럽·나이트 ■ 감성주점 ■ 헌팅포차 ■ 콜라텍·무도장 ■ 홀덤펍·홀덤게임장 ※ 사회적 거리두기 2~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
영업시간제한	■ 식당·카페 ■ 노래연습장 ■ 직접판매홍보관 ■ 목욕장 ■ 수영장 ■ 실내체육시설 ■ 학원 ■ 영화관·공연장 ■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■ 놀이공원 ■ 워터파크 ■ 오락실·멀티방 ■ 상점·마트·백화점 ■ 카지노 ■ PC방 ※ 이·미용업의 경우, '21.7.7~'21.8.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

※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

3.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

□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.

○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3에 따라, 숙박·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, 도·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.

* (10억원 이하)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 등
(30억원 이하) 예술·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
(50억원 이하)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
(80억원 이하)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광·농·임·어업, 섬유제품 제조업 등
(120억원 이하) 식료품·음료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, 전기장비 제조업 등

○ 연매출액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직전 3개*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의 평균값*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
* 예외 사례 예시)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~36개월 미만인 경우 :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총 매출액 /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

4.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온 경영위기업종을 손실보상에서는 왜 제외했는지?

□ 「소상공인법」 상에서 손실보상 대상은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
□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들을 고려하여 업종별 관계부처에서 별도 대책 등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Ⅱ 보상금 산정

5.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?

□ 손실보상금은 “일평균 손실액 × 방역조치이행일수 × 보정률”로 산정합니다.

< 손실보상금 산식(안) >

일평균 손실액		방역조치 이행일수		보정률
’19년 대비 ’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’19년 영업이익률+’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)	×		×	

○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’19년 대비 ‘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’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.

○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‘21.7.7.~’21.9.30.간 사업자가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.

○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%로 정하였습니다.

< 손실보상 산정 예시 >

조건 : ① ‘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
② ’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
③ ‘19년 영업이익율 10%
④ ’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 25%
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
⑥ 보정률 80%

8월 손실보상금 = {(① - ②) × (③ + ④)} × ⑤ × ⑥
= {(200 - 150) × (0.10 + 0.25)} × 28 × 0.8
= 392만원

6.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?

□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, 매출액 대비 인건비*·임차료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(일평균 손실액)에 반영합니다.

* 급여 + 퇴직급여 + 복리후생비

※ 임차료·인건비와 달리 전기료, 광고선전비, 설비비, 기계의 감가상각비 등은 경영환경에 따라 비용이 증감하는 변동비 성격이 강한 점 고려

< 손실보상금 산식(안) >

일평균 손실액	×	방역조치 이행일수	×	보정률
'19년 대비 '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'19년 영업이익률+'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)				

7. 실제 지출한 인건비·임차료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?

□ 기준연도인 '19년 과세자료로 ①인건비·임차료가 확인되면 해당 자료로 보상금을 산정하고, ②그렇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등 업종통계를 활용합니다.

○ 업종통계 적용한 사업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실제 인건비·임차료를 증빙한 경우, 확인보상 절차를 통해 재산정합니다.

8.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?

□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,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는 "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"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9. 보정률을 80%로 설정한 이유는?

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국민,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80%로 결정했습니다.

○ 영업이익 감소의 80%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, 나머지 20%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였습니다.

10.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?

□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,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.

○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, 「'19년 귀속 경비율 고시」에 따른 단순경비율, 「'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」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.

11. 성실 납세하여 '21년 매출액이 높게 신고된 경우, '19년 대비 '21년 매출감소액이 줄어들어 보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것 아닌지?

□ '19년 대비 '21년 동월 매출감소액은 신용카드매출 등 전산으로 자동집계되는 과세인프라*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, 성실 납세자가 손해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,

* 현금영수증 결제금액, 신용카드 결제금액,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, 전자지급거래액, 전자계산서 발급액

○ (필요시) 오히려 성실납세자의 경우, 부가세 신고자료상 매출액이 높게 집계되어 현금매출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가 더 커지므로, 더 많은 보상금을 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

<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방식 >

7월 일평균매출감소액('19.7 대비 '21.7)				
개업연월	기준연도	비교연도	현금매출산정	일수
~'18.12	('19.7인프라	- '21.7인프라)	X($\frac{'19부가세}{'19인프라}$)	31
'19.1~'19.6	('19.7인프라	- '21.7인프라)	X($\frac{'20부가세}{'20인프라}$)	31
'19.7~'20.6	('20.7인프라X$\frac{'19.7시설평균인프라}{'20.7시설평균인프라}$	- '21.7인프라)	X($\frac{'20부가세}{'20인프라}$)	31
'20.7~'20.11	('21.7인프라X$\frac{'19.7시설평균인프라}{'21.7시설평균인프라}$	- '21.7인프라)	X($\frac{'20부가세}{'20인프라}$)	31
'20.12~'21.7	('21.7인프라X$\frac{'19.7시설평균인프라}{'21.7시설평균인프라}$	- '21.7인프라)	X($\frac{'20시설평균부가세}{'20시설평균인프라}$)	31

12.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?

□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(개별 사업자등록번호)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.

13.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?

□ 「감염병감염병」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,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·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Ⅲ 손실보상 신청 및 이의신청

14.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

□ 온라인·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①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, ②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신속보상의 경우,

- 온라인 신청은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

-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*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 서식

② 확인보상의 경우,

- 온라인 신청은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*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「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(안)」 별지 제1호 서식

15.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?

□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온라인의 경우,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.

○ 오프라인의 경우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*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*「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(안)」 별지 제2호 서식

16. 이의신청 등에 수개월 소요되는 것 아닌지?

□ 지자체(시군구 227개)-지방중기청(13개)-소진공(지역센터 70개)으로 구성된 전국적 집행·민원 대응체계를 구축,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.

Ⅳ 기 타 (시스템, 콜센터 등)

17.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?

□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-3300이며,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아울러, 채팅상담(손실보상114.kr) 창구를 개설하여 실시간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8. 「감염병예방법」상 손실보상과 비교시 지원 수준 낮은 것 아닌지?

□ '소상공인 손실보상'은 '감염병예방법 손실보상'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'영업이익+고정비'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,

○ 또한, 의료기관 손실보상시 '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감소율' 만큼 차감하여 보상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개념으로 보정률(피해인정률, 80%) 적용하고 있습니다.

복지부	('**19년 일평균 영업이익**+'**19년 일평균 고정비**)	x	(1+물가상승률)
중기부	'19년 동기 대비 일평균 매출감소액 × ('19년 **영업이익률** +'19년 **매출액 대비 인건비·임차료 비중**)	x	보정률

19. 손실보상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위드코로나를 통해 자영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데?

□ 소상공인 시설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현 방역수칙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

○ 개인 방역수칙 강화 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□ 방역당국과 함께 현 방역상황과 소상공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방역수칙 개선방향에 대해 지속 논의해나가겠습니다.